



》》 “2009년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 개최 알림

- ◇ 우리회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로 지정(2009년 정기총회 의결)하였습니다.
- ◇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행사는 매년 지부별로 순환 개최하되, 매 3년 주기로 전국수의사대회로 확대 개최됩니다.
- ◇ 올해는 경상북도 지부가 주관하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 일 시 : 2009.10.31(토) 10:30 ~ 17:00
- 장 소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 참석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회 회원(참석희망회원은 소속 시·도지부로 신청)
- 주 최 : 대한수의사회
- 주 관 : 경북수의사회
- 행사내용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청 특강 등 유명인사 특강
 - 회원 친목도모 레크리에이션 등

》》 2009년도 제2차 지부장 간담회 개최



2009년 제2차 지부장 간담회

우리회는 지난 7월 30일(목) 12시부터 16시까지 수의과학회관에서 회장단, 감사,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2차 지부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의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추진 대책, 2009년도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 행사 계획 및 2011년 WSAVA 세계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중앙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도 있었다. 특히, 참석한 임원들은 수의사처방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별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전문지기자·축산관련단체 홍보팀장 간담회 개최



전문지기자·축산관련단체 홍보팀장 간담회

우리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수)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수의과학회관에서 축산관련 전문지 담당 기자(7)와 축단협 각 회원단체 홍보팀장(13)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지기자·축산관련단체 홍보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등 세계화로 인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홍보 확대를 위한 축산관련단체 및 전문지와의 정보소통 및 홍보교류 강화와 수의·축산 현안 연계홍보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수의사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와 농식품부 축산정책 홍보방안의 효율화 및 각 기관의 주요 추진사업 상호공유 및 간접 지원·홍보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지부 및 산하단체 소식

》》국군의학연구소, 군견 진료 세미나 개최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대령 정철희)는 지난 7월 9일 목요일 부대 회의실에서 전군 수의장교를 대상으로 「군견에서 다발하는 질환의 진단과 진료」라는 주제로 군견 진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성준 교수, 이영원 교수, 정성목 교수, 송근호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실시하였다.

국군의학연구소장 정철희 대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의장교들의 군견 진료 수준이 더욱 높아질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어 기쁘며, 2002년 10월 10일 국군의학연구소와 충남대학교간의 자매결연 협정 이후 지금까지 군견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강사 초빙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 동물병원장 박성준 교수는 “국군의학연구소와의 자매결연 협정 이후 국내 수의계 여건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견 진료를 학생들이 자주 접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의장교들의 임상 능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2009년도 한국수의병리학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9.9.24(목) 09:30~16:30
- 장 소 : 유성호텔(대전)
- 초록접수 / 수의병리전문의 및 수의진단전문가 심사의뢰서 접수 : 2009.9.4(금)
- 문 의 : 총무이사 윤순식(yoonss2@nvrqs.go.kr / 031-467-1753), cafe.daum.net/ksvp

≫≫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개최

-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 16일(금)
- 장 소 :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호텔
- 주 최 : 대한수의학회
- 초록접수 : 2009년 7월 7일(화) ~ 2009년 9월 20일(일)
- 기타문의 : www.ksvs.or.kr / 02-880-122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유가공업 HACCP 적용 매뉴얼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중·소규모 유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HACCP 가이드 시리즈 제3편 “유가공업 HACCP 적용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시·도, 유가공협회 및 유가공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유가공업 HACCP 적용 매뉴얼”은 국내에 HACCP제도가 도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온 유가공업체들이 10여 년 동안 HACCP을 운용하면서 구축해온 다양한 자료와 운용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유가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유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에는 유가공업 위생관리 변천사, HACCP 제도, 민원처리절차, 유가공업 선행요건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HACCP 계획 개발 및 운용, HACCP 평가와 검증 및 Q&A 등 HACCP과 관련된 현장중심의 운용 정보와 사례, 점검 서식, 현장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HACCP 적용업체 및 적용 예정 중·소규모 업체, 관련협회, 평가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원은 본 책자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에서 널리 활용되어 유가공품의 HACCP 적용확대에

다른 HACCP 제도 활성화로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업종별 축산물 HACCP 적용매뉴얼을 시리즈로 발간하여 HACCP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HACCP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철새 및 야생조류의 주된 폐사원인은 농약중독인 것으로 밝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하여 년 중 전국에서 폐사된 철새 및 야생조류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농약중독으로 확인되었다고 7월 15일 밝혔다.

국내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원인은 다른 요인보다 철새를 포함하는 야생조류를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역학적으로 매우 높게 추정됨에 따라, 검역원에서는 이들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원에 2008년 10월부터 금년 7월 현재 총 38건이 의뢰되었으며 의뢰된 철새의 종류는 대부분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었으며 텃새는 비둘기, 까치, 까마귀, 독수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의뢰된 38건을 정밀 진단한 결과 농약중독(모노크로토포스, 메티다치온, 포스파미돈 등)이 24건, 질병(보툴리즘, 살모넬라, 에로모나스병) 4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보툴리즘에서 검출) 1건과 원인미상 9건(조직의 부패 등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것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약 63% 농약중독으로 확인된 철새(텃새포함)의 가검물은 대부분이 위장(선위와 근위)내에 볏씨, 콩, 깨 등과 같은 곡식류가 다량 존재하였고 이들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포스파미돈 및 모노크로토포스 등과 같은 유기인제성 살충제가 다량 검출되어 이들 농약에 의한 폐사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메토밀, 카보퓨란 등도 검출되었다.

질병진단센터(센터장 이오수)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에 대한 병성감정을 통해 폐사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국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새도래지, 관광지 등에서 철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죽은 사체가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전국 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개 집단 폐사 원인은 급성 출혈성 폐렴인 것으로 밝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7월 16일 경기도 모 애견훈련소에서 발생한 개 집단 폐사의 원인은 연쇄상구균에 의한 급성 출혈성 폐렴임을 7월 22일 밝혔다.

이 훈련소는 약 30두의 품종이 우수한 개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7월

수의계소식

13일 갑자기 기침, 콧물, 일시적 체온상승, 콧구멍 건조 등의 임상증상을 시작하여 3일후에는 일부 개체에서 식욕절폐, 변비, 흑색변, 체온상승(41~42℃)을 보이다가 급기야 7일간에 총 9두가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검역원은 이러한 집단폐사의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사체의 부검한 결과 폐 기관지의 발적과 출혈, 혈액양 흉수 등이 확인되었으며, 병리조직검사에서도 심한 출혈성 폐렴 소견을 확인하였다. 원인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직접적인 폐사원인은 출혈성 연쇄상 구균 (*Streptococcus equi* subsp. *zooepidemicus*)에 의한 급성 폐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개 인플루엔자바이러스(H3N2)와 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도 확인되어 이러한 증상을 가중시킨 것으로 진단하였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체가 확인됨에 따라 검역원은 즉시 해당 축주에 우선으로 연락을 하여 항생제 요법을 우선 권장하였으며 현지에 경기도 가축방역관과 함께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진단결과를 설명하고 소독, 백신접종, 격리 등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수의과학검역원장은 다두 사육하는 개 사육농가, 유기견 보호센터, 동물보호소, 애완견 훈련센터 등에 철저한 위생관리, 소독철저, 새로 유입된 개체에 대한 격리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집단폐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병열 박사, 세계인명사전에 잇달아 등재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 질병진단센터 정병열 박사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 (Who's Who in the World)에 이어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행하는 “전세계 100명의 의학전문가”로 선정되었다.

정병열 박사는 수의 세균 및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병원성 대장균 O-157, 렙토스피라병, 요네병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과 가축의 소모성 질병 등에 대하여 16편의 국제 학술지 (SCI)와 52편의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 백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렙토스피라병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렙토스피라병은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향후 사람뿐 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질병으로, 가축에서의 유행형을 밝힘으로서 진단 및 예방치료를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사람의 렙토스피라병 감염 원인이 가축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병열 박사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진단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며, 양축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 진단 및 현장 중심의 연구에 매진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바이러스설사병(BVD)의 철저한 예방대책 강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최근 5년간 질병의뢰된 소의 질병을 확인해본 결과 소바이러스설사병(BVD)에 의한 설사, 유산 및 지속감염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소바이러스설사병에 의한 유산태아

소바이러스설사병은 바이러스가 임신기에 감염이 되면 혈류를 통하여 태아에 감염되고 생존하여 태어난 송아지는 자연적으로 지속감염우가 된다. 이러한 지속감염우는 우군 내 바이러스를 일생동안 분변 등으로 배출하여 건강한 다른 소를 감염시킨다. 감염된 소는 사료효율이 떨어지고 심하면 유산, 설사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질병중의 하나이다.

최근 5년간 검역원에 의뢰된 가검물을 분석한 결과에 BVD에 의한 유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23건)에는 2007년(3건)에 비해 7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2009년에도 대부분 BVD바이러스에 의한 유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의 뇌조직에서 BVD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16.2%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3.5%정도가 지속감염우로 판단되었다. 이는 2006년에 지속감염우를 조사한 결과(1% 미만)에 비해 4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소바이러스설사병(BVD)에 대한 감염실태와 피해규모를 알기 위하여 농식품부에 “BVD 지속감염우 조기검색” 연구개발과제로 제안해 두고 있으며 채택이 되면 국내 사육소의 감염상태와 지속감염우에 의한 감염경로, 소질병 원인체에 대한 정밀검사 등이 폭넓게 조사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바이러스설사병의 중요성과 피해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림과 동시에 백신접종, 격리, 양성우의 조기 도태 등에 농가 예방대책에 대하여 전문지 등으로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돼지질병 워크숍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7월 16일부터 7월 17일(2일간)까지 돼지 사육 시스템과 질병발생과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하여 돼지(豚) 질병 워크숍을 삼천포해상관광호텔(경남 사천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돼지의 출생부터 도축까지의 사육·유통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여 단계별 돼지 질병발생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관·학·업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강사들(10명)의 주제발표(4개), 사례발표(3개) 및 특강(3개)과 검역원, 시·도 가축 방역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및 협·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동 주제

수의계소식

에 대한 분임 토의 및 발표가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최근 돼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열병, 돼지소모성질병 등 주요 돼지 질병의 발생과 사육시스템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분석 및 정보공유를 함으로서, 향후 가축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돼지(豚)질병 워크숍 개최로 사육시스템이 질병발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돼지의 출생부터 도축까지의 사육시스템이 질병발생에 미치는 상관관계의 중요성 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검역원장(이주호)은 향후 동 주제의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및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용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이주호)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엔 추가로 지정된 부작용 모니터기관은 서울대공원을 비롯하여 수생동물, 야생동물 등 지역 및 축종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동물병원을 추가하였다.

검역원은 총74개소의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을 운영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정상적인 사용시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취소, 회수·폐기명령,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소식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사람으로부터 돼지에게 전파될 수 있다”

H1N1은 돼지로부터 닭에 전파될 수 있는가?

독일의 바이러스학자들은 사람에서 팬데믹(pandemic)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H1N1)가 돼지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Journal of General Virology) 독일 바이러스학자들은 사람에서 돼지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위한 방어장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논쟁중이라고한다. 독일 그리스발트근처의 프레드리히-로플러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실험적으로 바이러스를 다섯 마리의 돼지에 감염시켰다. 감염군과 동거시킨 비감염군 돼지3마리는 4일만에 전파되었으며, 전체 8마리의 돼지는 임상증상을 나타내었다. 비록 돼지사이에서

는 빠른 전파가 일어나지만, 동거시킨 닭 5마리로는 전파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람에서 돼지에게는 가지만 돼지로부터 닭에게는 전파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초기 팬더믹상태에서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염려했으나, 이 연구의 리더인 토마스 바렌캠프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으며, 돼지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돼지로의 전파가 늘어날 수 있으며, 바렌캠프박사팀은 팬더믹 상태의 역학상 돼지(중간숙주)의 관련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람으로부터 돼지로의 전파 차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돼지와 접촉을 차단하고, 바이러스가 확인된 돼지는 통제를 해야한다고 한다. 현재 돼지의 상용백신이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면역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확인중이라고 한다.

(출처 : 2009년 7월13일 토마스 맥스 프루첵, Animal Pharm / 제공 : 정성대회원, 대성미생물 부설연구소 이사)

》》“호주에서 2가지 신종 동물바이러스 발견 ”

호주의 크리스 카우레드박사(Australian Animal Health Laboratory in Geelong, Victoria)가 박사과정연구중 소(Middle Point Virus)와 모기(Stretch Lagoon orbivirus)에서 신종바이러스를 동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하였다고 CRCA(Cooperative Research Centers Association)이 보고하였다. 미국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카우레드박사는 바이러스를 분석했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분류가 힘들었고, 프로젝트팀들이 필드시험 및 실험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시험법은 국가 바이러스감시 프로그램의 협조를 받아서 150이상의 샘플을 통해 새로운 2종바이러스를 동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아비바이러스(arbivirus)로 곤충이 물면서 전파되며, Middle Point Virus는 Chinese orbivirus와 관련성이 있고, Stretch Lagoon virus는 신종이다. 질병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이는 미래의 발병가능성 관리에 대한 도움을 줄것이고, 진단법의 개발로 기존의 바이러스와 감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2009년 6월 1일 토마스 맥스 프루첵, Animal Pharm / 제공 : 정성대회원, 대성미생물 부설연구소 이사)

》》“경구용 돼지 엠하이오백신의 일본연구”

일본의 국립동물검역원(Japan's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 과학자들은 돈단독생균백신을 백터로하는 돼지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뉴모니아에(Mycoplasma hyopneumoniae)

수의계소식

의 경구용백신을 개발하였다.

저널(Vaccine)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돈단독생균백신(Erysipelothrix rhusiopathiae Koganei65-0.15)의 피하주사로 돼지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돈단독균은 경구백신후에 돼지의 편도에 균락을 형성하므로 경구용 엠하이오백신의 백터후보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팀들은 돈단독 재조합종으로 마우스와 돼지에서 백신효능시험을 하였으며, 재조합백신의 피하접종을 한 마우스에 돈단독(강독) 공격방어능도 확인하였다.


돼지에 재조합백신을 대용유에 섞어서 경구로 먹인 경우에서도 돈단독 방어능 및 엠하이오폐렴병변의 감소(감염 후 방어시험)가 확인되었다.

(출처 : 2009년 6월 3일 토마스 맥스 프루첵, Animal Pharm 제공 : 정성대회원, 대성미생물부설연구소 이사)



입법예고 및 법령개정

»» 동물병원도 약국으로부터 인체약품의 날개 구매 가능(약사법 시행규칙 제63조 1항 4호)

2009년 6월 19일자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7호)에 따르면 의약품의 개봉판매(날개판매)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허용되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의약품 개봉판매가 불가하였다. 

개정 전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규칙
제63조(의약품의 개봉판매) ①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63조(의약품의 개봉판매)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u>